

# ○○○○○ 상임감사

## 시정(환수) 요구

제 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

소 관 부 서 ◆◆◆, ○○○○

조 치 부 서 ◆◆◆, ○○○○

감사대상기관 보조사업자 (□□□□□)

### 1. 관계 법령 및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는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3조(보조금의 반환) 1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019년도 10월 15일 ○○○○○○(이하 ‘○○○’)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페이지를 통해 □□□□□(이하 ‘□□’)의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 감사부는 해당 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였다. 감사 결과 보조금 중 인건비(사례비) 부분에 대한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였고,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는 2018년도와 2019년도에 ○○○ 및 지자체로부터 [표1]과 같이 보조금 교부를 받았다.

[표1] 2018 - 2019년도 ‘□□’ 보조금 교부 내역

년도	지원사업	지원신청사업명	지원기관	교부금액
2019				14,000,000
				16,000,000
				57,000,000
				45,000,000
				5,235,450
2018				90,000,000
				15,000,000
				16,000,000
				42,000,000
				56,000,000
			2개년 보조금 지원현황 합계	360,956,760

그러나 감사결과 2018년도와 2019년도의 ☒☒☒☒ 및 2019년도 □□□□□□ 집행에서 정산 후 인건비(사례비)의 일부를 단체의 대표(JJJ)통장으로 되돌려 받아 단체의 공동자금 등으로 사용한 보조금 목적 외 사용(용도 외 사용)의 부적정 집행 사안이 확인되었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인건비(사례비)의 부정수급 집행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 보조금 부정수급 집행현황

년도	지원사업	지원신청사업명	급여수급자	급여일	원 급여	페이백일자	페이백 금액
2019				2019.06.10	1,400,000	2019.06.10	1,400,000
				2019.06.10	1,400,000	2019.06.10	1,400,000
				2019.06.10	1,400,000	2019.06.10	1,400,000
				2019.06.10	1,400,000	2019.06.10	1,400,000
				2019.06.10	1,400,000	2019.06.10	1,400,000
				2019.06.10	1,400,000	2019.06.10	1,400,000
				2019.06.10	1,353,800	2019.06.11	1,353,800
				2019.06.10	1,353,800	2019.06.10	1,353,800
				2019.07.10	725,250	2019.07.10	725,250
				2019.07.12	1,050,000	2019.07.10	1,050,000
				2019.07.13	1,050,000	2019.07.10	1,050,000
				2019.07.14	1,050,000	2019.07.10	1,050,000
				2019.07.15	1,050,000	2019.07.10	1,050,000
				2019.07.16	1,050,000	2019.07.10	1,050,000
				2019.07.17	1,050,000	2019.07.10	1,050,000
				2019.07.19	1,015,350	2019.07.17	1,015,350
				2019.07.20	1,015,350	2019.08.14	1,015,350
				2019.10.10	1,050,000	2019.10.11	1,050,000
				2019.10.10	1,050,000	2019.10.10	1,050,000
				2019.10.10	1,050,000	2019.10.10	1,050,000
2019.10.10	1,050,000	2019.10.10	1,050,000				
2019.10.10	1,050,000	2019.10.10	1,050,000				
2019.10.10	1,015,350	2019.10.22 2019.06.11	1,015,350				
2019.10.10	1,015,350	2019.10.22 2019.11.01	1,015,350				
2019.10.10	1,015,350	2019.10.10	1,015,350				
<b>2019년도 ○○○○○○ 페이백 총액</b>							<b>29,509,600</b>
2019				2019.05.30	547,200	2019.06.03	547,200
				2019.05.30	547,200	2019.05.30	547,200
				2019.05.30	547,200	2019.06.03	547,200
				2019.05.30	547,200	2019.06.03	547,200
				2019.05.30	547,200	2019.05.30	547,200
				2019.05.30	547,200	2019.06.03	547,200
				2019.05.30	547,200	2019.05.30	547,200
				2019.05.30	547,200	2019.06.03	547,200
				2019.05.30	547,200	2019.06.03	547,200
				2019.05.30	912,000	2019.06.03	912,000
				2019.07.08	912,000	2019.07.17	912,000
				2019.07.08	547,200	2019.07.08	547,200
				2019.07.08	547,200	2019.07.10	547,200
				2019.07.08	547,200	2019.07.30	547,200
				2019.07.08	547,200	2019.07.17	547,200
				2019.07.08	547,200	2019.07.08	547,200
2019.07.08	547,200	2019.07.17	547,200				
2019.07.08	547,200	2019.07.17	547,200				
<b>2019년도 □□□□□□ 페이백 총액</b>							<b>10,032,000</b>
2018				2018.07.10	1,280,000	2018.07.10	1,200,000
				2018.07.10	1,237,760	2018.07.11 2018.07.15	1,237,760
				2018.07.10	1,280,000	2018.07.10 2018.07.18	1,280,000
				2018.07.10	1,280,000	2018.07.10	1,280,000
				2018.07.10	1,280,000	2018.07.10 2018.10.08	1,280,000
				2018.07.10	1,280,000	2018.07.10	1,280,000
				2018.07.10	1,280,000	2018.10.08	1,280,000
2018.07.10	1,280,000	2018.07.10	1,280,000				

	2018.07.10	1,237,760	2018.07.11	1,200,000
	2018.11.23	1,600,000	2018.12.11	1,600,000
	2018.11.23	1,547,200	2018.12.11	1,500,000
	2018.11.23	1,600,000	2018.12.11	1,600,000
	2018.11.23	1,600,000	2018.12.11 2018.10.08	1,600,000
	2018.11.23	1,547,200	2018.12.11 2018.12.13 2018.12.21	1,547,200
	2018.11.23	1,600,000	2018.12.11 2018.10.08	1,600,000
	2018.11.23	1,600,000	2018.12.11	1,600,000
	2018.11.23	1,600,000	2018.12.11	1,600,000
	2018.11.23	1,600,000	2018.11.26	1,600,000
	2018.09.10	320,000	2018.12.11	320,000
	2018.09.10	309,440	2018.10.08	309,440
	2018.09.10	320,000	2018.09.10	320,000
	2018.09.10	320,000	2018.10.08	320,000
	2018.09.10	309,440	2019.10.07	309,440
	2018.09.10	320,000	2018.10.08	320,000
	2018.09.10	320,000	2018.10.08	320,000
	2018.09.10	320,000	2018.10.08	320,000
	2018.09.10	320,000	2018.12.11	320,000
<b>2018년도</b>				<b>28,423,840</b>
<b>2018년도 - 2019년도 페이백 합계</b>				<b>67,965,440</b>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위반의 경우로 제 33조 1항에 따라 목적 외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보조금이므로 시정(회수)되어야 한다.

다만, 2019년도 □□□□□□의 경우 국비와 시비가 각50%로 매칭되어 지원되었으므로 □□□□□□의 사업비의 경우에 ●●●●는 10,032,000원 중 5,016,000원을 환수하고 남은 50% 페이백 금액은 ◇◇◇◇◇◇으로 이첩하여 시정(환수)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 시정(환수) 금액은 총62,949,440원이다.

### 3. 관계자 의견

위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대상인 보조사업자 □□□□□는 보조금 부정수급(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감사 이후의 환수절차와 기타조치요구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치할 사항 ○○○○○ 위원장은

-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등을 위반한 ‘□□□□□’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1항 및 ○○○ 『보조금운영관리규정』 제44조에 따라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 인건비(사례비) 일부 62,949,400을 시정(환수)하시고, [시정(환수)]
- ② ◇◇◇◇◇◇에서 보조금 환수금액(5,016,000)을 시정할 수 있게 해당사항을 ◇◇◇◇◇으로 통보·이관하시고, [통보]
- ③ ○○○ 『보조금운영관리규정』 별표3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서 향후 □□□□□에 관련 보조금 지원 제제 등의 세부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 상임감사

## 고발 조치

제 목 문화예술진흥기금(보조금) 집행 사기 및 횡령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감사부

감사대상기관 보조사업자 대표 및 업체대표 (AAA, HHH, BBB)

### 1. 관계 법령 및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에 따르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55조(횡령,배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

특하게 하여금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는 「▷▷▷▷」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하는 공공 기관으로 매년 목적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목적사업 중 소외계층·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 ‘⊕⊕⊕⊕⊕’, ‘▲▲▲▲▲’ 이상 3개 보조사업자는 2017년과 2018년도 ●●●●●●의 ▲▲▲▲▲▲▲▲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아래 [표1]와 같이 교부받았다.

[표1] 연도별 보조금 교부내역

연도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명	대표자	교부액 (천원)
2017년			AAA	53,100
2017년			HHH (실무자 : AAA)	68,400
2017년			AAA	89,600
2018년			AAA	52,000

그러나 위 3개 보조사업자는 특수관계인으로 의심되는 매출처(공급자)와 공모 하여 보조사업의 보조금 정산 종료 이후 기 발행되었던 전자세금계산서 중 일부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취소하여 교부된 보조금의 일부를 착복하였다. 세금계산서 취소 및 보조금 착복내역은 다음 [표2]과 같다.

[표2] 세금계산서 취소 건수 및 보조금 횡령 추정액

사업연도	단체명 (대표자)	보조사업명	보조금 교부액 (원)	e나라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부정유형	취소건수 (금액)
2017년	▲▲▲▲▲ (AAA)	/	53,100,000	전자 세금계산서 구매 취소	거래취소 21건 (27,240,000원)
2017년	▲▲▲▲▲ (AAA)		68,400,000	전자 세금계산서 구매 취소	거래취소 19건 (38,555,500원)
2017년	⊕⊕⊕⊕⊕ (HHH)		89,600,000	전자 세금계산서 구매 취소	거래취소 17건 (54,277,000원)
2018년	▲▲▲▲▲(AA A)		52,000,000	대표자 가족기업과 거래	27,425,000원
			허위매출신고 의심	18,042,000원	

위 3개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두 곳의 거래업체(공급자)인 ‘(주) □□□□□□’, ‘●●●●●●’과 거래를 하였는데 두 곳의 거래업체는 2017년 경 일부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였으며 이후 기획재정부의 e나라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징후 발견 통보(2019.1.23.)가 이루어지자 취소신고 2년이 경과된 2019.1.29.과 2019.2.8.에 세금계산서 수정신고를 하였다.

해당 행위에 대하여 보조사업자(▲▲▲▲▲, ⊕⊕⊕⊕⊕, ▲▲▲▲▲)의 소명은 2017년 당시 세금계산서 취소는 공급업체의 실무진의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급 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취소 건수가 상당히 많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취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보조사업자 AAA

(▲▲▲▲▲ 대표, ▲▲▲▲▲ 대표)은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 사내이사 (2018년)로 오래전부터 특수한 관계로 의심된다. 또한, 보조사업자 ⊖⊖⊖⊖⊖ 대 표는 HHH이나 AAA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보조사업자와 매 출처 간의 거래취소내역 및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시점은 다음 [표3]와 같다.

[표3] 거래취소내역 및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내역

단체명 (대표)	거래처	거래처 대표자	거래취소금액	거래취소 추정시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시점
		BBB	27,240,000원	2017년 7월 ~ 11월	2019년 1월 29일 / 2019년 2월 8일
			38,555,500원		2019년 1월 29일
			54,277,000원		2019년 1월 29일 / 2019년 2월 8일

그러나 위 세 개의 단체와 두 곳의 거래처는 ●●●●●의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보조사업 모니터링 결과 동일한 수법으로 보조금 정 산금액 중 일부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매출취소 처리한 점이 확인되었으며 전자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시점(2017년 경)부터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e나라시스템’의 부정수급 징후 통보(2019.1.23.)가 있기까지 약 2년 여간 보조금을 착복하고 부정수 급 의심 징후의 통지가 있는 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등의 동일한 수법으로 보조금 을 횡령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다수사업의 보조금을 착복하며 이루어진 행위로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단순 실수라 볼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취소 등 행위는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매출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정수급 징후 통지가 있는 후의 일로 추정됨으로 이전에 보조금을 착복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면 보조금 부정수급의 혐의가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취소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으로 사기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국가 보조금의 개인 착복이므로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혐의가 있으며, 보조금을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부정수급 하였으므로 이는 국가의 재산을 착복한 횡령의 혐의가 있다.

또한 2017년 당시 매출업체인 [X][X][X][X][X], ●●●●● 대표 BBB이 대표로 있는 거래처의 매출을 확인해 보면 세 개 단체와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다른 매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세 개 단체의 관련자로 재직하고 있는 AAA과 세 개의 단체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진행한 두 곳의 거래처 대표인 BBB과의 불법적인 커넥션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X][X][X][X][X], ●●●●●은 정상적이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된다. 상기 보조사업자의 관련자 AAA, HHH와 관련 매출업체 대표 BBB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기의 혐의’가 있으며, 동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범죄혐의가 있다.

또한, 「형법」 제355조에 따라 국가의 보조금을 거래업체 등에 집행한 후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 등에 사용한 정황이 상당히 있으므로 횡령의 혐의가 있다.

### 3. 조치사항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 2 및 제355조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정수급 단체 및 업체대표(AAA, HHH, BBB)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함.

[붙임] 세금계산서 취소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내역

(단위 : 원)

보조연도 (사업연도)	보조사업자명 (대표자)	보조사업명 (공급받는자)	보조금 교부액	공급자		취소내역			
				거래처명	대표자명	취소일자	(원)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신고액	취소액
2017년			53,100,000			2017-07-29		7,000,000	-7,000,000
						2017-11-23		300,000	-300,000
						2017-11-23		900,000	-900,000
						2017-11-23		1,200,000	-1,200,000
						2017-11-23		1,650,000	-1,650,000
						2017-11-23		4,200,000	-4,200,000
						2017-10-12		100,000	-100,000
						2017-10-12		100,000	-100,000
						2017-10-12		300,000	-300,000
						2017-10-12		300,000	-300,000
						2017-10-12		400,000	-400,000
						2017-10-12		550,000	-550,000
						2017-10-12		1,400,000	-1,400,000
						2017-07-30		500,000	-500,000
						2017-07-29		290,000	-290,000
						2017-07-29		500,000	-500,000
						2017-07-29		1,000,000	-1,000,000
						2017-07-29		1,500,000	-1,500,000
						2017-07-29		2,000,000	-2,000,000
						2017-07-29		2,750,000	-2,750,000
		2017-11-23		300,000	-300,000				
2017년			68,400,000			2017-07-25		9,600,000	-9,600,000
						2017-11-24		150,000	-150,000
						2017-11-24		290,000	-290,000
						2017-11-24		400,000	-400,000
						2017-11-24		500,000	-500,000
						2017-11-24		590,000	-590,000
						2017-11-24		1,600,000	-1,600,000
						2017-10-12		721,000	-721,000
		2017-10-12		865,100	-865,100				

보조연도 (사업연도)	보조사업자명 (대표자)	보조사업명 (공급받는자)	보조금 교부액	공급자		취소내역							
				거래처명	대표자명	취소일자	(원)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신고액	취소액				
						2017-10-12		1,190,000	-1,190,000				
						2017-10-12		1,450,000	-1,450,000				
						2017-10-12		2,137,000	-2,137,000				
						2017-10-12		2,950,000	-2,950,000				
						2017-10-12		7,443,400	-7,443,400				
						2017-07-25		599,000	-599,000				
						2017-07-25		1,740,000	-1,740,000				
						2017-07-25		2,670,000	-2,670,000				
						2017-07-25		3,540,000	-3,540,000				
						2017-11-24		120,000	-120,000				
				2017년			89,600,000			2017-07-23		12,459,000	-12,459,000
										2017-11-23		1,050,000	-1,050,000
										2017-11-23		1,560,000	-1,560,000
										2017-11-23		1,770,000	-1,770,000
										2017-11-23		1,950,000	-1,950,000
										2017-11-23		4,170,000	-4,170,000
										2017-10-12		230,000	-230,000
										2017-10-12		1,560,000	-1,560,000
										2017-10-12		1,770,000	-1,770,000
										2017-10-12		1,950,000	-1,950,000
		2017-10-12						2,550,000	-2,550,000				
		2017-10-12						4,170,000	-4,170,000				
		2017-07-23						1,258,000	-1,258,000				
		2017-07-23						4,980,000	-4,980,000				
		2017-07-23		5,900,000	-5,900,000								
		2017-07-23		6,500,000	-6,500,000								
		2017-11-23		450,000	-450,000								

# ○○○○○ 상임감사

## 고발 조치

제 목 □□□□□(보조금) 집행 사기 및 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3조 1항 위반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감사부  
감사대상기관 보조사업자 (■■■■■)

### 1. 관계 법령 및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55조(횡령,배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금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는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3조(보조금의 반환) 1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는 「▷▷▷▷」에 따른 □□□□□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매년 목적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목적사업 중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 인력고용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는 2015년도 ●●●●●의 △△△△△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아래 [표1]와 같이 교부받았다.

[표1] 보조금 교부내역

연도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명	대표자	교부액 (원)
2015년			III 위1명	총 30,600,000원
				· 1차 지급액 : 13,600,000 · 2차 지급액 : 17,000,000

그러나 2016년 1월경 ■■■■■에서 근무하던 △△△으로 부터 해당 단체가 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고, ●●●●●(이하 ●●●) ●●●

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위 보조사업자는 정산 시 △△△의 월 급여를 세후1,564,230(세전 1,800,000원으로 자부담10만원포함)으로 보고하였지만, 실제로 인력이 지급받은 월 급여는 세후1,432,500원으로 보고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의 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에게 미지급된 급여(차액)은 526,920(131,730×4개월) 원이다. 실제 인력이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는 [표2]와 같다.

[표2] 인력의 정상 월 급여

구분	○○○○○○○	자부담	금액
세전	1,700,000	100,000	1,800,000
세후	1,464,230	100,000	<u>1,564,230</u> (정상 월급여)

이에 ○○○○ ○○○○에서(당시 ■■■■■)는 당시 인력이 근무한 기간인 4개월분의 부정수급 교부금 6,800,000원(170만원×4개월)의 반납을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반납이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단체 대표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며 보조금 사용에 관한 최종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가보조금 착복의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급여를 지급할 시 ○○○○ 보고용 통장과 실제로 급여를 수급하는 통장을 따로 개설하여 ○○○○ 보고용 통장은 공연장(단체)에서 관리 하며 부당사용 하였다. 더불어 보고된 인력의 근무지는 ■■■■■이며 담당업무는 무대조명이었지만 실제로 인력이 근무한 곳은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 회사의 인력으로 근무하였고 담당업무는 사무직(회계 등)이었으므로 이는 인력의 실제 근무지를 허위로 보고한 사기의 혐의가 있다.

‘■■■■■■■’(대표:Ⅲ)는 지원사업 정산 보고를 허위로 하였으며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30조와 제33조 1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을 요구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단체대표(Ⅲ)는 보조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허위로 정산보고를 한 행위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착복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 3. 조치사항

「형법」 제347조, 제355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0조, 제33조 1항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정수급 단체대표(Ⅲ)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 증거서류 목록

구분	증거서류명	비고
확인서	□□□□□ 확인서 1부	
질문서	□□□□□ 질문서1호	
답변서	□□□□□ 답변서1호	
확약서	□□□□□ 확약서 1부	
기타 증거서류	□□□□□ 제보자 제출 증거서류 일체 1부	
기타 증거서류	세금계산서 취소건 관련 세금계산서 취소현황 1부	
기타 증거서류	세금계산서 취소건 관련 ■■■■ 자문 1부	
기타 증거서류	세금계산서 취소건 관련 보조사업자 소명자료 1부	
기타 증거서류	세금계산서 취소건 관련 부정 징후 추가발견 자료 1부	
기타 증거서류	■■■■■■ 보조금 부정수급 제보자료 일체 1부	
기타 증거서류	■■■■■■ 관련 내용증명서 1부	
기타 증거서류	■■■■■■ 관련 회의서류 각 1부	